

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2 및 제9조, 행정안전부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경기도지사

I 추진목적

-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·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II 추진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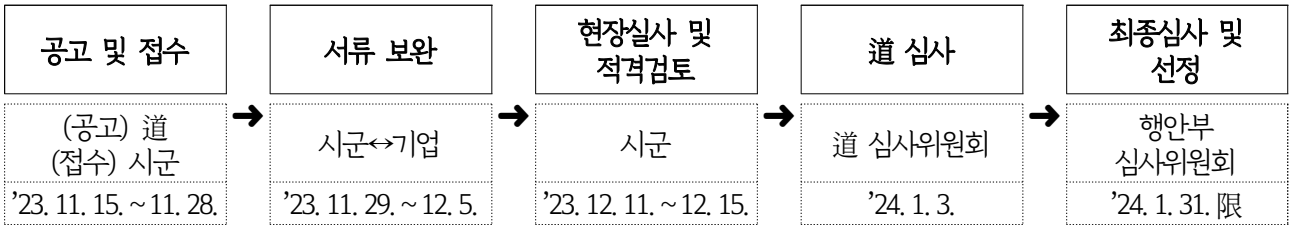
- (지정규모)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
- (지정유형)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- (지원내용)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
 - (사업비 지원)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
 - (자립 지원) 컨설팅, 홍보·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

구 분		재지정(2회차)	고도화(3회차)
사업비	보조금	3천만원	2천만원
	자부담	20% 이상	

« 관련 특례 »

- 청년마을기업
 - (요건) ① 지역주민 5인 이상, ② 지역주민 비율 50% 이상, ③ 청년 비율 30~50%
 - (특례) 자부담 경감(20% → 10%), 주민비율 완화(70% → 50%), 심사 가점(3점)
- 인구감소지역
 - (대상) 가평군, 연천군 /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89개 기초지자체
 - (특례) 우선 선정 가능,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(80% → 70%)
 - ※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우선 선정 가능

Ⅲ 추진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①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

- (접수기간) '23. 11. 15.(수) ~ 11. 28.(화) 18:00 / 2주간
- (접 수 처)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- (신청방법) 방문 또는 우편* 접수(팩스, e-mail 접수 불가)
- *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

② 서류보완

- (보완기간) '23. 11. 29.(수) ~ 12. 5.(화) / 1주간
- (주요내용)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·증빙서류 누락 등 보완

③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

- (실사기간) '23. 12. 11.(월) ~ 12. 15.(금) / 1주간
- (주요내용)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,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도 추천
- ※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서류보완

④ 도 심사위원회

- (심사일정) '24. 1. 3.(수)
- (심사결과)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

⑤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

-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

IV 신청자격 및 지정·운영요건

【신청자격】

-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

① 마을기업 지정·운영요건

- (공동체성)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지정요건	
1	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-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이 동일해야 함 -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
2	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
3	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4	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5	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(균등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이고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 합은 50% 이하여야 함 * 특수관계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
② 운영요건	
1	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(출자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,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
2	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,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<질의>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?

⇒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,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

※ (예시)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,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,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

○ (공공성)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지정요건	
1	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2	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3	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
4	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,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
5	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,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-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
② 운영요건	
1	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* 및 고용의 형평성**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* 일자리의 질 :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** 고용의 형평성 : 다양한 계층·연령·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
2	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-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·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

<질의>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,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?
 ⇒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,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
 - 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
 ※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44조(임직원의 겸직금지) ⑤항
 - (영농조합법인 등) 관련 규정 없음

○ (지역성)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면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지정요건	
1	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
2	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
3	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함
4	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- 지역주민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,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-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,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② 운영요건	
1	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·소비·교환·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2	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(70%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)

《 지역의 범위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 》

- ‘읍·면·동’을 기본으로 함(행정동 기준,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)
- 설립 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‘시·군·구’ 까지 확대하고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8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- 단, ‘인구감소지역’은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- '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·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※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,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

<질의1>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?

⇒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능
 ※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5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

<질의2> 대의원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, 지역주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?

⇒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, 대의원의 80%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- (기업성)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, 정부 및 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지정요건	
1	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
2	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*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* 회원의 경력·경험, 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, 자격증 보유
3	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-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(단,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
② 운영요건	
1	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-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% 이상을 적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2	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
3	2012년 이전에 비(非)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,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)

<질의1>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?
⇒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(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)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

<질의2>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
⇒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,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

② 마을기업 의무교육

- (이수대상)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

구 분	교육대상	교육명	비 고
재지정(2회차)	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	전문교육(4시간)	필수
고도화(3회차)			가점 3점*

* 가점 부여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
- (교육운영) 온라인 상시학습으로 운영
 -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(www.gseek.kr) 내 의무과정으로 편성
 - 회원가입/로그인 > ‘마을기업’ 검색 > ‘경기도 마을기업 필수교육(전문)’ 교육 수강신청 > 본인인증 > 학습하기
- (이수확인) 온라인 학습 완료 후 수료증 출력
 -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온라인학습 현황 > 학습완료 > 수료증 저장/출력
- (이수효력)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(고도화는 1년)
 -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道 심사 전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(미제출 시 심사 제외)

【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】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 - ※ 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 및 모두에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 -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V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	비 고	
기본 서류	공통	• 사업신청서	• [서식 1-1, 1-2] 마을기업 사업신청서	
		• 회원 명단	• [서식 2] 마을기업 회원 명단	
		• 법인등기부등본	•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	
		• 정관		
		• 자부담 통장	• 법인명의 통장(대표자 명의 X) - 자부담 이체 후 확인증 시군 제출 • 기존 출자하여 확보한 법인 기금으로 자부담 활용 가능 - 법인 기금에서 자부담 일괄 사용 시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며, 출자금 명부 및 회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	
	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	•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자 명단 등 법인 출자자 전원 및 출자금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※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하여야 함		
	추가 (회차별)	재지정 (2회차)	• 전문교육 수료증	•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수료증 출력/저장
			• 실적보고서	• [서식 3] 마을기업 실적보고서(1회차)
			• 정산서류	• 1회차 정산서류
		고도화 (3회차)	• 재무제표	• 재무제표 - [필수] '21-'22년도 - [선택] '23년도
• 실적보고서			• [서식 3] 마을기업 실적보고서(2회차)	
• 정산서류			• 2회차 정산서류	
• 재무제표	• 재무제표 - [필수] '21-'22년도 - [선택] '23년도			
기타 증빙 서류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	•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	
	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		• 계약기간 명시	
	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		• 토지이용규제확인서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	
	•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		• 여성 마을기업 대표, 청년마을기업 등	
	•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		• 법인 회의록 등 -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	

VI 기타 안내사항

-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,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
- 신청기업은 담당 공무원의 신청 및 구비·증빙서류 확인,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등 각종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
- 심사과정에서의 검토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의 규정에 따름

VII 문 의 처

구 분	부 서	전화번호	구 분	부 서	전화번호
경기도	사회적경제육성과	031-8008-3586	광명시	사회적경제과	02-2680-0741
수원시	마을자치과	031-228-3881	하남시	일자리경제과	031-790-5011
용인시	자치분권과	031-324-2637	군포시	자치분권과	031-390-0940
고양시	소상공인지원과	031-8075-3723	오산시	지역경제과	031-8036-7585
성남시	지역경제과	031-729-3665	양주시	일자리경제과	031-8082-6091
화성시	사회적경제과	031-5189-6059	이천시	일자리정책과	031-644-4198
부천시	일자리정책과	032-625-2702	구리시	산업지원과	031-550-2044
남양주시	일자리정책과	031-590-4085	안성시	일자리경제과	031-678-0777
안산시	소상공인지원과	031-481-2609	의왕시	자치행정과	031-345-2133
평택시	미래전략과	031-8024-3525	포천시	일자리경제과	031-538-4428
안양시	고용노동과	031-8045-5123	양평군	일자리경제과	031-770-2637
시흥시	일자리총괄과	031-310-6055	여주시	일자리경제과	031-887-2284
김포시	시민협치담당관	031-980-2746	동두천시	일자리경제과	031-860-2484
파주시	도시재생과	031-940-5073	과천시	복지정책과	02-3677-2464
의정부시	일자리정책과	031-828-2372	가평군	일자리정책과	031-580-2957
광주시	일자리경제과	031-760-2672	연천군	지역경제과	031-839-2286

붙임 1 마을기업 유형

①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

- (재지정)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- (고도화)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기차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
②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

- (지역자원 활용형)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·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기업
 - 사업계획서에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
 - 지역특산물 가공, 관광·체험, 지역 먹거리(로컬푸드) 등
- (사회서비스 제공형)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·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
 -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 -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, 공동육아, 방과후학교, 주거복지 등
- (마을 관리형) 마을자산 운영,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
 -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마을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 - 마을주차장 운영,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

- ▶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
- ▶ 행안부나 자치단체에서 심사 시 유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유형을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
③ 청년마을기업

○ (정의) 청년*들이 주도하여 설립·운영하는 (예비)마을기업

*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

○ (혜택)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지역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가점(3점)

○ (요건)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, 지역주민비율 및 청년회원비율 충족

<질의> 회원(출자자) 수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은? (청년회원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)

- ⇒ - 회원(출자자) 5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3인 이상
 - 회원(출자자) 6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3인 이상
 - 회원(출자자) 10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5인 이상

○ (청년회원비율)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(30%~50%)

« 청년회원비율 기준 »

시군 청년인구비율*	15% 미만	15% ~ 20% 이하	20% 초과
청년회원비율	30%	40%	50%

*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.mois.go.kr 참고(신청연도의 직전년도인 '22.12.31. 기준 적용)

- 청년마을기업으로 2·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회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청년마을기업의 경우,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·휴학생 또는 졸업생*(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)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
 *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

○ (청년비율 유지)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회원비율 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요건을 유지하여야 함

- 지정 당시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청년회원으로 간주하고,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원으로 변경
-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취소됨

○ (기타사항)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·요건 외에는 일반 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이 필요하며,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

《 시군별 청년회원비율 》

연번	시군	인구 수	청년 수	청년인구비율	청년회원비율
1	수원시	1,190,964	287,519	24.1%	50%
2	용인시	1,074,971	211,076	19.6%	40%
3	고양시	1,076,535	223,765	20.8%	50%
4	성남시	922,518	198,790	21.5%	50%
5	화성시	910,814	190,028	20.9%	50%
6	부천시	790,128	167,754	21.2%	50%
7	남양주시	737,353	132,681	18.0%	40%
8	안산시	641,660	152,336	23.7%	50%
9	평택시	578,529	128,622	22.2%	50%
10	안양시	548,228	117,806	21.5%	50%
11	시흥시	512,912	108,149	21.1%	50%
12	김포시	484,267	85,491	17.7%	40%
13	파주시	495,315	97,005	19.6%	40%
14	의정부시	463,724	97,231	21.0%	50%
15	광주시	391,462	72,174	18.4%	40%
16	광명시	287,945	56,820	19.7%	40%
17	하남시	326,059	64,227	19.7%	40%
18	군포시	266,213	57,418	21.6%	50%
19	오산시	229,849	49,644	21.6%	50%
20	양주시	243,432	43,997	18.1%	40%
21	이천시	222,721	48,262	21.7%	50%
22	구리시	188,701	38,272	20.3%	50%
23	안성시	188,842	35,077	18.6%	40%
24	의왕시	160,221	33,982	21.2%	50%
25	포천시	146,701	26,133	17.8%	40%
26	양평군	122,323	16,023	13.1%	30%
27	여주시	113,150	18,030	15.9%	40%
28	동두천시	91,546	16,071	17.6%	40%
29	과천시	78,137	16,160	20.7%	50%
30	가평군	62,150	9,115	14.7%	30%
31	연천군	42,062	7,299	17.4%	40%

붙임 2 심사기준

□ 재지정(2회차) 마을기업

심사항목	배점	심사지표
공동체성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(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, 회원 규모, 출자액 증가 정도 등) •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• 마을기업 설립·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·의견수렴 노력 •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• 전문교육 이수
공공성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• 사회공헌활동의 실적(정량, 정성적 성과) •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•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·유지 노력
지역성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(지역 내 사업장 소재, 지역자원 활용 정도, 지역주민비율) •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•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•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
기업성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 실적(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·역량 보유 유무) •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(매출 및 이익 등) • 발전가능성(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) •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• 지속가능성(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)
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관리의 충실성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 포함) •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(보조금 집행실적 포함) •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• 단가 산출의 적정성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•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
가점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•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<p>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

※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□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
심사항목	배점	심사지표
공동체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(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, 회원 규모, 출자액 증가 정도 등) •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• 마을기업 설립·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·의견수렴 노력 •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
공공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• 사회공헌활동의 실적(정량, 정성적 성과) •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•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·유지 노력
지역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(지역 내 사업장 소재, 지역자원 활용 정도, 지역주민비율) •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•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•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
기업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 실적(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·역량 보유 유무) •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(매출 및 이익 등) • 발전가능성(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) •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• 지속가능성(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)
사업계획의 적정성 (실적 포함)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(보조금 집행실적 포함) • 사업 관리의 성실성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 포함) •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• 단가 산출의 적정성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•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
가점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년 내에 '전문교육(4시간)'을 이수한 경우 •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•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<p>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

※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붙임 3 사업비 편성기준

▶ (사업비) 보조금 + 자부담

- (보조금)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안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
 - (자부담)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(보조금의 10~20% 이상)
- ※ (예시) 보조금이 5,000만원인 경우, 자부담액은 1,000만원 이상(이 경우 사업비는 6,000만원)

① 인건비(보수·일용임금)

○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※ 사회서비스 제공형,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%까지 편성 가능

○ 마을기업 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)로 마을기업의 대표, 부회장, 총무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이사, 감사 등 임원에게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*

* 보조사업비(보조금 및 자부담금)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

- 등기임원 제외 마을기업 회원 고용 시,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

○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

<질의1> 인건비에 4대 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포함이 가능한지?

⇒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등은 간접인건비로 포함 가능함

② 운영비

« 일반수용비 »

○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

- 포장재는 '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'에 사업비의 10% 이하로 편성

○ 전문가 활용비

-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

- 마을기업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

- 강사비, 컨설팅 비용은 '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'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

◀ 임차료 ▶

-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◀ 재료비 ▶

-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◀ 기타 ▶

- 기타 항목*의 총합 : 총사업비의 3% 이내로 편성

* '일반수용비' 중 '사무용품 구입비', '소모성 물품 구입비', '공공요금 및 제세'

③ 건설비(시설비)

-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% 미만으로 편성·집행 가능

④ 자산취득비

-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, 한시적(1~2개월)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

-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

※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

《 마을기업 회계 비목 》

보조비목 코드/명	보조세목 코드/명	세부항목 및 설명
[110] 인건비	[01] 보수	정규직원에 대한 보수
	[04] 일용임금	일용직,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
[210] 운영비	[01] 일반수용비	1. 사무용품 구입비
		2. 인쇄비 및 유인비 - 책자, 전단,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
		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
		4. 소모성 물품 구입비
		6. 공고료 및 광고료 - tv, 신문, 잡지,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		7. 전문가 활용비 -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
[02] 공공요금 및 제세	1. 공공요금 - 우편요금, 전화요금, 전기가스료, 상하수도료,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	
[07] 임차료	1.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	
[09] 시설장비 유지비	1. 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, 기계장치), 공구, 기구, 비품,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.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 포함)	
[11] 재료비	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식물 및 종자 등 포함)	
[420] 건설비	[03] 시설비	1. 건물, 공작물, 구축물, 대규모 기계장치,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.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·노임·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. 건물, 기계, 기구,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(재료비 포함)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
[430] 유형 자산	[01] 자산취득비	1. 건물 및 대규모 기계, 기구, 차량 등의 취득비 2. 차량, 운반구 및 공구·기구 비품 3.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. 서류함, 책상, 의자,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